

2002 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I.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총괄

1. 세입결산총괄

-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49,994,427천원, 징수결정액 522,229,872천원이며 수납액은 513,690,777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14%, 징수결정액대비 98.4%를 수납하였음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계	449,994,427	522,229,872	513,690,777	8,539,095
일반회계	0	799,091	791,161	7,930
도시개발 특별회계	449,994,427	521,430,781	512,899,615	8,531,165

2. 세출결산총괄

-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 355,335,656천원중 340,184,681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5.6%에 해당하는 325,499,336천원을 지출하고, 16,553,040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3.7%인 13,283,280천원은 불용되었음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355,335,656	340,184,681	325,499,336	16,553,040	13,283,280
일반회계	316,477,980	313,283,932	310,704,683	3,984,499	1,788,798
도시개발 특별회계	38,857,676	26,900,749	14,794,653	12,568,541	11,494,482

II.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 2002회계년도 세입은 799,09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대비 99.0%인 791,161천원을 수납하였음
- 사항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사항별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계	799,091	791,161	99.0	7,930
세외수입	799,091	791,161	99.0	7,930

2. 세출결산

- 2002회계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16,477,980천원으로 이중 313,283,932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99.2%에 해당하는 310,704,683천원을 지출하고 3,984,499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0.56%에 해당하는 1,788,798천원이 불용되었음.

○ 세항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세항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계	316,477,980	313,283,932	310,704,683	3,984,499	1,788,798
사회개발비	316,477,980	313,283,932	310,704,683	3,984,499	1,788,798

3. 세출예산 집행내용

가. 이용 및 전용

- 이용은 1건에 6천 2백만원으로
 - 신설된 청계천복원사업추진본부 및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등 수당지급분 5천 8백만원과 청계천복원사업추진본부 계약직직원 기본급 4백만원을 행정관리국 인건비 예산에서 이용
- 전용은 3건에 2억 2천만원으로
 - 도시·건축자료전시관 설치·운영에 따른 홍보 및 안내요원에 대한 보수비로 3천 6백만원을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전용
 -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사업 추진과 관련, 학술용역비 1억 7천만원은 주거지역 세분화 자치구 경상보조금 집행잔액에서 전용
 - 청계천복원사업추진본부 및 지역균형발전추진단 등 신설된 조직의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 충당을 위하여 1천4백만원을 주거지역 세분화 자치구 경상보조금 집행잔액에서 전용

나. 예비비지출

- 예비비 총 사용액은 2건에 8억 5천 2백만원으로
 - 21C 서울기획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 운영경비 1천만원, 청계천복원사업추진본부 신설 조직에 대한 기본급 8억4천2백만원이 사용됨

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 이월된 예산은 총 9건에 39억 84만원으로서,
 - 자치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의 조정 및 종합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사업의 7건이 용역발주 지연 및 절대 과업기간 미도래로 25억 7천 9백만원이 사고이월되고,
 - 도시·건축자료전시관의 이전·설치를 위하여 책정된 시설비 등 14억 5백만원은 실시설계기간 부족에 따른 연내 착공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음

라. 불용액

- 2002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3,164억 7천 7백만원의 0.56%에 달하는 17억 8천 8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 집행사유 미발생 9억 9천 2백만원
 - 예산절감 1억 7천 2백만원
 - 예산집행잔액 6억 2천 4백만원

Ⅲ.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 세입은 사업수입(사용료수입, 청산금수입, 매각수입, 융자금수입)과 사업외수입(순세계잉여금, 예탁금수입, 잡수입)으로서 예산현액 449,994,427천원중 521,430,78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8.4%인 512,899,616천원을 수납하였음.

○ 예산과목별 내역

(단위 : 천원)

세항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계	449,994,427	521,430,781	512,899,616	98.4	8,531,165
사업수입	44,681,000	133,051,057	124,519,892	93.6	8,531,165
사업외수입	405,313,427	388,379,724	388,379,724	100	0

2. 세출결산

-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37,411,289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1,446,387천원을 합한 38,857,676천원임. 이중 38.0%인 14,794,653천원을 집행하고 12,568,541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29.6%에 해당하는 11,494,482천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음

○ 예산과목별 내역

(단위 : 천원)

세항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38,857,676	26,900,748	14,794,653	12,568,541	11,494,482
관리비	2,118,826	1,571,696	1,571,696	0	547,130
사업비	26,807,787	25,329,052	13,222,957	12,568,541	1,016,289
예비비	9,931,063	0	0	0	9,931,063

3. 세출예산 집행내용

가. 이용 및 전용 : 없음

나. 예비비지출

- 예비비 총사용액은 1건에 6억원으로 왕십리 뉴타운 시범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사용

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 이월된 예산은 총 15건에 125억 6천 8백만원으로,
 - 성동구 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설계용역 1억 3백만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 강서구 공항로 일부구간 확장사업 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등 14건에 124억 6천 5백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고 이월됨

라. 불용액

- 2002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388억 5천 7백만원의 29.6%에 달하는 114억 9천 4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 집행사유미발생 4억 2천 1백만원
 - 예산절감 8천 4백만원
 - 예산집행잔액 10억 5천 8백만원
 - 예비비 99억 3천 1백만원

IV. 검토의견(전문위원)

□ 2002회계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 도시계획국 2002회계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인 사회개발비와 특별회계인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입결산은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7억 99백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7억 91백 만원으로 소송비용 회수수입 미납 등의 사유로 인하여 8백만원이 미수납되어 수납률은 징수결정액대비 99.0%입니다.

-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499억 94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214억 3천만원이나, 수납액은 5,128억 99백만원으로 청산금 체납으로 85억 31백만원이 미수납되어 그 수납률

은 징수결정액대비 98.4% 입니다.

- 다만,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과오납 반환액이 111억원이나 되는 데,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거 우리 시에서 건축하는 업무용 건축물(25,000㎡ 이상), 판매용 건축물(15,000㎡ 이상)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과밀부담금에 대해 한무개발, 한무컨벤션,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등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청이 패소함에 따라 반환하게 되었는데, 소송패소에 따른 불가피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서울시에서 과밀부담금 부과 시 신중을 기했다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향후 행정력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관련규정의 정비와 합리적 기준설정으로 과밀부담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출결산의 경우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3,164억 78백만원중에서 3,132억 83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3,107억 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39억 84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7억 8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56%로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불용률 4.8%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고,
-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88억 57백만원으로 이중 269억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147억 9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25억 68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14억 9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률은 29.6%로 서울시 특별회계 평균불용률 9.4%보다 20.2%가 높은 수치입니다.

□ 세출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은 때에는 가능하므로,
 - 신설된 청계천복원사업추진본부 및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등 상당지급분 5천 8백만원과 청계천복원추진사업본부 계약직직원 기본급 4백만원을 행정관리국 인건비 예산에서 이용한 것인 데, 예산총칙에 인건비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행정과목인 세항, 목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할 수 있는 것으로서,
 - 도시·건축자료전시관 설치·운영에 따른 홍보 및 안내요원에 대한 보수비 3천 6백만원은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하였고,
 -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사업 추진 관련 학술용역비 1억 7천만원, 청계천복원사업추진본부 및 지역균형발전추진단 등 신설된 조직의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 1천 4백만원을 주거지역 세분화 자치구 경상보조금 집행잔액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 그러나,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예산의 한정성원칙의 예외로서 예산의 신속적·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활용되는 제도이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사업 추진 등 시급한 현안사업이라고는 하나, 급조적으로 전용된 결과로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을 염두에 두고서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시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를 보다 면밀히 다각도로 검토·결정하였다면 이러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사고이월 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의거 지출원인행위를 필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하였거나,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사고이월 처리한 예산은 총 23건에 151억 47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건에 25억 7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건에 125억 68백만원입니다.

- 이는 전년도에 사고이월액 28억 5백만원보다 123억 42백만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 이를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추진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발주 지연 및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 11건이며,
 - 보상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세입자 미이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이 12건인 데,
 - 용역사업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과업기간이 통상 12~20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도시개발사업은 사업특성상 보상협의 곤란, 공사의 장기화, 집단민원의 빈발, 동절기공사중지 등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많아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요인도 있다고 사료되나,
 - 사고이월된 건수와 액수가 매년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용역사업의 경우 너무 늦게 발주하거나 추진방향이 지연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 동제도는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도모하고자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용역사업의 경우는 조기 발주, 일정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투자심사 강화, 당해연도내 집행가능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향후 모든 사업의 예산편성시 과학적인 공정관리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당해 연도내에 집행 가능한 규모만큼만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불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률은 0.56%로 시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4.8%보다 훨씬 낮으나,
- 특별회계의 불용률은 29.6%로 시전체 특별회계의 불용률 9.4%보다 20.2%가 높은 수준인데, 이는 주로 예비비 미사용액(74.8%)에 기인한 것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13백만원, 집행잔액 16억 82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장래예측을 신중히 하여 책정된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 불용액 발생사유 중 주거지역 세분화사업, 택지개발 매각관련 일반운영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시 사업예산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사가 부실한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산출기준의 설정 등 예산편성기법상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넷째, 개발사업의 낭비요인과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예산은 2000년도에는 경계선 설정 및 도시계획적 대응방안마련 용역비 2억원,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적 및 현황측량비 3억원, 2002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구역 관리방안 연구비 2.8억원, 2003년에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용역비 3억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경계선 및 지적측량 4.6억원이 편성되는 등 총 15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현재 7억 5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요인도 있다고 사료되나, 유사·중복된 용역을 거의 매년 실시함에 따라 예산낭비 요인이 크므로,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16억원이 편성되어 반포아파트지구는 2002.12.10일, 서초아파트지구는 2002.12.11일, 잠실 아파트지구는 2002.12.13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무려 15억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는데, 이렇게 회계년도말에 예산불용의 방지를 위해 사업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예비비의 지출은
 - 2002년 8월 시정운영 4개년계획 등 역점사업 선정을 위하여 설치된 21C 서울기획위원

- 회 실무분과위원회 운영비로 11백만원,
- 2002년 10월 청계천복원사업추진본부 신설조직에 대한 직원 기본급 지급 8억 42백만원,
- 2002년 12월 왕십리 뉴타운 시범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로 6 억원을 지출하였는 바,
- 이는 민선시장의 교체에 따라 제도 및 기구의 개편 공약의 이행과 역점사업의 변경에 따른 불가피성도 있다고 사료되나,
- 예비비란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사정 변경으로 예산액에 부족이 생겨 경비를 초과 지출하고자 할 경우 이용되는 제도라 할 수 있으므로
 - '왕십리 뉴타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 더구나,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사전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추경편성을 통해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던가, 2003년도 예산에 편성·집행하였어야 함에도 예비비제도란 편법을 이용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용역사업비를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3. 6.
도시관리위원회
전 문 위 원

1. 경 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03. 5. 9 (의안번호 217번)
- 위원회 회부일자 : 2003. 5. 12

2. 제안이유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시행 (2003.1.1) 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관리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설명서에 기초조사결과, 자원조달방안 및 환경성 검토결과 외에 토지적성평가, 경관계획을 추가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보호하도록 함. (안 제6조)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균형발전사업지구와 민자역사계획지역을 추가하고, 그동안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규정을 조례로 격상시켜 정함. (안 제16조)
-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 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개발,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아파트)사업 등의 경우에만 사전 자문을 받고, 그 이외에는 선택적으로 받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안 제17조)
- 라. 주요 산 및 하천변의 경관유지와 보호를 위해 조망 및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을 정함. (안 제41조, 안 제42조)